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국 가 기 술 자 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제 직무 역량을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방법을 작업형 실기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주관식 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합한 시험, 면접시험으로 다양화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와 관련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매 분기”를 “매년”으로 한다.

제33조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로 한다.

별표 4의2의 등급란 중 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응 시 자 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별표 4의2의 등급란 중 기능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 (제20조의2제2항 관련)

자격 등급	검정방법	
	1차시험	2차시험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주관식 또는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전체 등급	주관식 또는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 제2차시험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 (제29조제1항 관련)

소관 부처	위임기관	수 임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교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경찰청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소방청	소방청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림청	산림청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갖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에 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
4. 「먹는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4(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 매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연 락 처	(044) 202 - 7288